

의안번호	제600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
「소송비용(채권) 면제」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4년 5월 31일

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「소송비용(채권) 면제」 동의안

의안 번호	60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5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'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스포츠 센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(이하 당사자들)는 '20년 道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'23년 3월 소송이 종결되었음.
- 패소에 따른 당사자들의 소송비용은 '24년 1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정되었고, 같은 해 2월 소방본부는 당사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음.
- 당사자들은 '24년 3월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 「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에 관한 청원서」를 제출하였으나 내용보완을 이유로 철회하였고, 같은 해 4월 수정 제출하였음.
- '24년 4월 김꽃임 의원의 소개로 충청북도의회에 청원이 상정되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의결을 거쳐, 충청북도지사가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.
- 충청북도지사는 해당 사안을 검토한 결과, 당사자들은 비록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는 하나 화재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 피해자이며,

- 정부·국회·지방자치단체·지방의회 등 각계는 사건 직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장이 변함없는 바,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 건 소송비용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청원을 “수용”하는 의견임.
- 그러나 해당 청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한 면제가 핵심내용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채권을 면제하거나 효력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음.
- 또한 “청원에 대한 의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.”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, 채무면제에 대한 별도의 의결이 있어야 비로소 채권이 면제될 것으로 판단됨.
- 따라서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86조에 근거해 채권이 종국적으로 면제될 수 있도록 「소송비용(채권) 면제 동의안」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면제대상 :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
 - ※ 사건번호 :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3카합 1045(유가족), 1046(부상자)
- 소송비용 세부내역(총 204명, 금176,814,484원)
 - ① 유가족 소송비용(202명, 총 금139,230,973원) / '24. 1. 25. 확정
 - 2심 선정당사자 민○○ 부담금액 : 금88,507,851원
 - 3심 선정당사자 김○○와 선정당사자들(201명) 부담금액 : 각자 금251,104원

② 부상자 소송비용(2명, 총 금37,583,511원) / '23. 8. 21. 확정

- 선정당사자 한○○ 부담금액 : 금34,100,546원

- 선정자 이○○ 부담금액 : 금3,482,965원

○ 관련사건

- 1심 : 청주지방법원 2020가합10070(유가족),
2020가합10100(부상자)

- 2심 : 대전고등법원 2021나51984(유가족), 2021나51892(부상자)

- 3심 : 대법원 2022다297373(유가족), 2022다297366(부상자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88조, 제139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86조, 「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」 제1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붙임 : 보조자료 1부(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, 별송) 끝.